**지게차 운전자 등록 신청서**

|  |  |  |
| --- | --- | --- |
| 신청인 | 소 속 | ㈜ O O O O |
| 성 명 | 홍 길 동 |
| 생년월일 | 1988. 01. 03.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 운전경력 | 3년 |
| 운행정보 | 운행기간 | 24. 12. 30. ~ 25. 05. 01. |
| 운행장소 | SFA 아산사업장 301동, 601동 |
| 에스에프에이 안전 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본인은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시작 전 점검 등 지게차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한다.  2. 이동 중 고장 발견 시 즉시 운행을 중단하며,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3.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내 제한 속도를 유지한다.  4. 운전석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한다.  5. 운전 시 과적재, 급출발/정지, 급회전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7. 지정된 운전자 외 지게차 운전을 금지한다.  8. 유도원의 지시에 따르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진행 및 절차를 준수한다.  9. 운전석 이탈 시 시동을 끄고, 시동 키는 키박스에서 분리 보관한다.  10. 그 밖에 다른 사항은 당사 「지게차 안전작업 지침」 을 따른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
| 1. 지게차 운행 면허증/조종교육 이수증 등  2.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증빙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해당 현장 내 동일 소속 근로자 전체분 제출  3. 운전자 증명사진(이미지 파일-컬러) | | |

주1) 운행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경안전팀에 즉시 통지  
주2) 운전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년으로, 해당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크레인 운전자 등록 신청서**

|  |  |  |
| --- | --- | --- |
| 신청인 | 소 속 | ㈜ O O O O |
| 성 명 | 홍 길 동 |
| 생년월일 | 1988. 01. 03.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 운전경력 | 3년 |
| 운행정보 | 운행기간 | 24. 12. 30. ~ 25. 05. 01. |
| 운행장소 | SFA 아산사업장 301동, 601동 |
| 에스에프에이 안전 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본인은 크레인을 운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시작전 점검 등 크레인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한다.  2. 크레인의 운전은 반드시 지정된 운전자가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3. 운전 중 이상 진동, 이상음이 발생하면 크레인을 즉시 정지하고 점검 요청한다.  4. 신호수/유도자는 정해진 사람이 하고 호각 및 수신호를 명확하게 한다.  5. 신호수/유도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신호를 한다.  6. 크레인 운전자는 신호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신호가 아닐 때에는 운전을 정지한다.  7. 줄걸이 용구는 달아올리는 화물의 중량, 형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
| 1.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증빙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해당 현장 내 동일 소속 근로자 전체분 제출  2. 운전자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컬러) | | |

주1) 운행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경안전팀에 즉시 통지  
주2) 운전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년으로, 해당 기간 경과 시 재신청

**고소작업대 운전자 등록 신청서**

|  |  |  |
| --- | --- | --- |
| 신청인 | 소 속 | ㈜ O O O O |
| 성 명 | 홍 길 동 |
| 생년월일 | 1988. 01. 03.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 운전경력 | 3년 |
| 운행정보 | 운행기간 | 24. 12. 30. ~ 25. 05. 01. |
| 운행장소 | SFA 아산사업장 301동, 601동 |
| 에스에프에이 안전 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본인은 고소작업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유도원을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원의 신호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승강 상태에서 작업대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4.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임의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는다.  5. 승강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작업대를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만 이동한다.  6. 과상승 방지봉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변형시키거나 해제시키지 않는다.  7. 머리 위쪽에 충돌 등의 요인이 있는지 작업지역을 사전 확인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
| 1.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증빙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해당 현장 내 동일 소속 근로자 전체분 제출  2. 운전자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컬러) | | |

주1) 운행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경안전팀에 즉시 통지  
주2) 운전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년으로, 해당 기간 경과 시 재신청